

부산광역시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」 사업 위탁회계법인 선정 공고

부산광역시와 부산라이즈혁신원은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 등 관리 사업의 연구비 정산 투명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고자 하오니, 관련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.

2025년 07월 30일
부산라이즈혁신원장

I. 공고 개요

- **공고명** : 부산광역시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」 등 국고보조금 사업 위탁회계법인 선정 공고
 - **모집기간** : 2025. 7. 30.(수) ~ 8. 12.(화), 14일간
 - **주요내용**
 -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과 부정집행 사전 방지를 위한 업무 등
 - 사업 회계보고서 작성 등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파일의 과업 부분 참고
 - **정산대상** : 부산라이즈혁신원이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사업(부산 RISE 사업 등) 참여 대학 및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운영비
 - **신청자격 및 대상**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계법인
 -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회계법인(본사 또는 지사)
 - 최근 1년 이내, 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법인
 - 한국공인회계사에 등록된 회계법인
 -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대학의 e-나라도움 사업비 정산 및 대응 등 회계 정산보고서 작성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
- ※ 협약 기간 중 업무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

< 신청 자격제한 사항 >

-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접수 마감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,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법인
-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1년 이내에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,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상태에 있는 경우
- 관련 기관에서 위탁 회계법인으로 선정된 후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 된 회계법인

II. 선정 규모 및 방법

- 선정규모 : 회계법인 0개
 - * 다수의 회계법인을 선정 시 균등 배분 예정
- 선정절차 : 1단계 서면검토, 2단계 대면평가 실시
- 선정시기 : 최종 선정 발표 후 8월 내 협약 예정
 - * 서면 검토는 신청 회계법인의 수에 따라 서면평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
- 회계법인 선정 방법
 - 평가방법 : 회계법인의 신청 제출서류 기반 서면 검토 후 대면 평가위원회(발표)를 통해 최종선정 예정
 - 평가항목 : 회계법인의 업무 역량 및 수행계획 등을 기반으로 평가
 - 선정기준 : 선정 기준 점수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결과통보 : 각 단계별로 개별 안내 예정
- 회계 수수료 요율
 - 수수료 산정 : 신청 회계법인이 회계 수수료 구간별 요율 제안 요청
 - 대학별 '25년도 사업 예산 규모는 차이가 있으며, 최저 약 5억 원부터 최고 약 200억 원까지 상이
 - * 정산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최대 0.1% 이내로 제안 요청(다수의 회계법인을 선정 시 균등 배분 고려)하며, 부산라이즈혁신원 '25년 관리대상 사업비는 약 1800억원 정도 (추후 변동 가능)
- 최종 선정 : 대면평가를 통한 최종선정 후 개별 안내
- 협약기간 : 협약 체결일부터 2026년 5월까지이며, 필요시 연장 가능
- 과업기간 : 협약 체결일부터 정산 업무 완료 시점까지
- 신청기간 : 2025. 07. 30.(수) ~ 08. 12.(화), 오전 10시 마감
- 신청방법
 - 회계법인이 부산라이즈혁신원 담당자 전자우편(jcchoi@bistep.re.kr)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일체 첨부하여 접수
- 문의처 : 부산라이즈혁신원 최진철 연구원(051-795-5173/jcchoi@bistep.re.kr)

Ⅲ.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
구분	제출서류	제출형태
제출 서류	· [붙임 0] 제안서 : 20페이지 이내 세로 규격	HWP/PDF
	· 법인 인감증명서 / 사용인감계 / 사업자 등록증 각 1부	HWP/PDF
	·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	PDF
	· 회계법인 및 총괄책임자 징계 등 조치 사실 확인원 각 1부 (한국공인회계사회, 조회기관 : '24.1.1.~' 24.12.31.)	PDF
	· 실적증명서(최근 5년 내, 국고보조금사업 위탁정산 참여실적 및 발주기관 확인 필요) (한국공인회계사회, 조회기간 : '24.1.1.~' 24.12.31.)	PDF

□ 과업기준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을 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**공동수급 불허함**
-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약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

□ 기간변경

-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
 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및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의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
- 위 경우를 제외하고 예정공정보다 지연이 생길 때에는 지연 원인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지연에 따라 발생된 문제는 과업 수행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

□ 계약해지

-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·형사상 일체를 요구할 수 없음
 -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가 지났음에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
 -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
□ 보안의무

- 최종보고서 및 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,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할 수 없음
- 과업 종료 시 모든 결과물과 각종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협약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정보는 모두 폐기(삭제)되어야 함